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25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한민수 · 채현일 · 이해식
허영 · 박정 · 박상혁
김영환 · 황희 · 이연희
임오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을 “따른”으로 한다.

1.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같은 조 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관리청,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
5.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

6. 그 밖에 공항·항만의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
하여 감시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중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를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생략)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1.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같은 조 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관리청,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u>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u>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한다)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① ----- -----<u>자</u>-----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